



보도	2022.12.26.(월) 조간	배포	2022.12.23.(금)		
	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	책임자	팀 장	김효희	(02-3145-7752)
담당부서		담당자	선임조사역	안병호	(02-3145-7761)
			조사역	최혜원	(02-3145-7763)

'23년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.

주요 내용

- ◆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('23.2.14.)이 도래함에 따라, 회사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.
 - o 최근 입법예고된 외감법 **시행령 개정**에 따라 그간 상장사에 준하는 감사인 선임절차*가 적용되던 대형비상장사 범위가 축소되고
 - * ^①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의무 부여, ^② 감사인 자격을 회계법인으로 제한, ^③ 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화 등
 - 규제완화 혜택이 **2023사업연도**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**자산1~** 5천억원 비상장사는 해당여부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.

개 요

- □ 新외부감사법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선임기한,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
 - '22년에 감사인 선임기한·절차 위반 등으로 189사가 지정되었으며, 지정회사 수가 전년(128사) 대비 47.7%(61사) 증가
 -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함

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

(단위: 사) '19년 '20년 구분 '21년 '22.11월 외부감사 32,431 31,744 33,250 37,992 대상회사 지정(선임기한 92 52 128 189 절차위반)



2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

- ◇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, 선임대상 사업연도, 감사인 자격 요건, 선정절차가 상이하므로,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·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- ① (주건상장회사) 등록 회계법인(現40개)만 감사인으로 선임^{*}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·유지해야 함
 - *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(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)가 선정한 감사인
- ② (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) 회계법인(감사반불가)만을 선임*해야 하며,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·유지해야 함
 - *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(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)가 선정한 감사인
 - 한편, **'22.12.22. 입법예고**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(안)에 따른 대형 비상장사의 **기준변경**(1천억→5천억)은 **2023사업연도**부터 **즉시 적용**

기 존	개 선			
전기말 자산총액	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or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(5조원이상) 소속회사	1천억원 이상 나 (현행 유지)		
1천억원 이상 - 비상장주식회사	② 이외 비상장주식회사	5천억원 이상 (기준상향)		

- ③ (비상장주식회사) ¹⁰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던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, ²⁰ 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^{*}해야 함
 - *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,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(자본금 10억원미만)에는 회사가 선정

-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,
 '23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('23.2.14.)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
 않으면 예외없이 감사인이 지정되므로 유의할 필요
- ④ (유한회사)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,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*가 있음
 - * 회사의 감사가 선정, 다만 [®]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, [©]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

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(붙임2)

회사 유형	선임기한 * [사업연도 개시일(D)]	사업 연도	자격요건	감사인 선정절차	
① 주권상장회사	D + 45일		등록회계법인	감사위원회 또는	
②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	(사업연도 개시 전**) 3 ¹		회계법인	감사(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)	
③ 비상장주식회사	D + 45일		실계버이	감사 또는 감사위원회	
4 유한회사	D + 45일		년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	감사 또는 회사(사원총회 승인***)	

^{*} 단,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

3 향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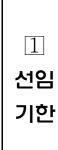
- □ 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, 코넥스협회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**안내**
 - 비대면(온라인) 설명회를 개최('23.1월)하여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의 주요내용을 안내하는 한편, 홈페이지 문의(Q&A) 또는 유선질의
 (☎ 02-3145-7767/7763)시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
- ※ (붙임) 1. 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

^{**} 상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임

^{***}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

[☞]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붙임 1 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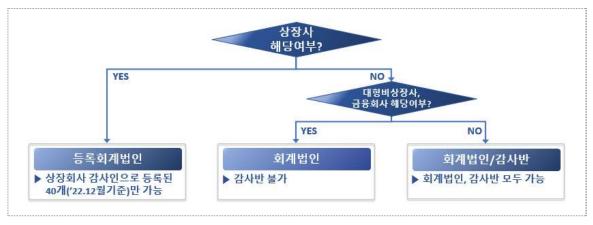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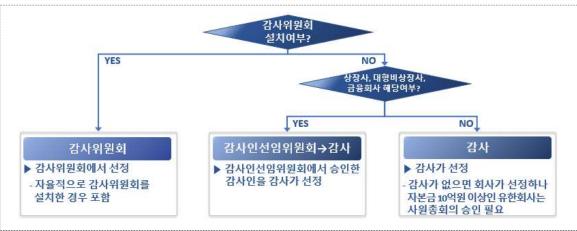
2 사업 연도



③ 감사 인 자격 요건



4 선정 절차



붙임 2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

1 주권상장회사

* 유가증권시장·코스닥시장·코넥스시장 상장회사

☐ **(선임기한)**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'23.2.14.까지 감사인을 선임(감사계약 완료) ○ 다만,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**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**(상법 §542의 11①, 영§37①)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('22.12.31.) 감사인 선임 □ (선임대상 사업연도)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이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□ (감사인 자격)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(現 40개)만 선임 가능 ※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□ (선정절차)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*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*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o 다만,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**감사인선임위원회**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☞ (참고1)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(→ p9) ☐ (선임 보고)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o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**감사위원회** 또는 **감사인선임위원회**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* 필요 * 예)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☞ (참고2) 선임보고 방법 안내(→ p10)

2 대형 비상장주식회사'· 금융회사"

- * ('23.1.1.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)
 -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: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
 - ^❷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**기업집단(자산5조원이상) 소속회사 :** 전기말 자산총액 **1천억원 이상**
 - ⁶ 이외에 비상장주식회사 : 전기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
 - **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

□ (선임기한)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'23.2.14.까지 감사인을 선임(감사계약 완료)
 다만,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*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('22.12.31.) 감사인 선임
* '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'에 따른 금융회사(법§3③의 회사는 제외)
□ (선임대상 사업연도)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
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
□ (감사인 자격)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(감사반 불가)
※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
□ (선정절차)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회사의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
○ 다만,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 [*] 는 감사위원회 에서 선정 한 감사인을 선임 *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
☞ (참고1)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(→ p9)
□ (선임 보고) 회사는 감사인 선임 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
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*
* 예)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3개 사업 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
☞ (참고2) 선임보고 방법 안내(→ p10)

3 비상장주식회사

□ (외부감사대상)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(12개월 미만시 환산) ③ 다음 중 **2가지 이상 해당([●]**자산 120억원 이상, ^❷부채 70억원 이상,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,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) ☐ (선임기한)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'23.2.14.까지 감사인을 선임(감사계약 완료) ○ 단,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(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)은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'23.4.30.까지 선임 □ (선임대상 사업연도)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□ (감사인 자격) 회계법인,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※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□ (선정절차) 감사(또는 감사위원회*)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*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○ 다만,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(자본금 10억원 미만)에는 회사가 선정 □ (선임 보고)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ㅇ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☞ (참고2) 선임보고 방법 안내(→ p10)

4 유한회사

□ (외부감사대상)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(12개월 미만시 환산) ③ 다음 중 **3가지 이상 해당([●]**자산 120억원 이상, [●]부채 70억원 이상, ^❸매출액 100억원 이상, [●]종업원수 100명 이상, ^⑤사원수 50명 이상) ※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 □ (선임기한)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'23.2.14.까지 감사인을 선임(감사계약 완료) ○ 다만, **초도감사***인 경우 **4개월 이내**인 '23.4.30.까지 선임 *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(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) □ (선임대상 사업연도)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□ (감사인 자격) 회계법인,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□ (선정절차)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○ 다만, ^①감사가 없는 경우 **회사가 선정,** ^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워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□ (선임 보고)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ㅇ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

☞ (참고2) 선임보고 방법 안내(→ p10)

참고 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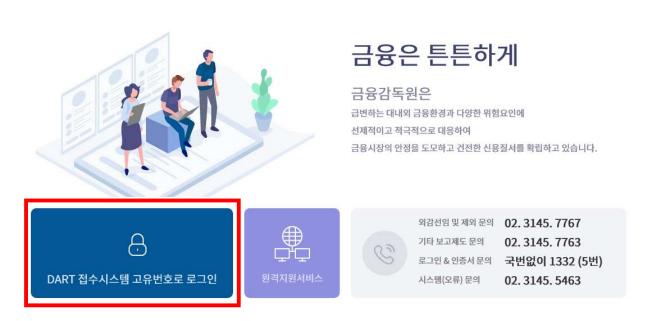
□ (구성원수) 반드시 5인 이상(5~6인) □ (구성원) 각 구성워별 한도 있음(사내이사·대표이사 등은 불가) ○ ^①감사 **1명**, ^②사외이사 **2명**이내, ^③기관투자자 임직원 **1명**, ^④주주 **1명**(지배주주 등을 제외^{*}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), (5)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 * 지배주주(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), 회사의 임원인 주주,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 투자자 주주는 제외 □ (대리행사) 기관투자자·주주·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 □ (외부전문가)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*로 충원이 가능 * 외부전문가의 대리인 선임은 불가능 □ (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) 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, 사외 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 o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**내부감사**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될 수 없음 □ (외의 개최) 재적위원 2/3이상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□ (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) 구성원 전원 동의시(5~6인) 위원장, 감사, 사외이사* 3인으로 구성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 가능 *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·채권금융회사·기관투자자 위원

o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**3인 전원 출석 및 찬성**으로 의결

참고 2 선임보고 방법 안내

① DART 접수시스템(https://filer.fss.or.kr)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http://eacrs.fss.or.kr) 로그인





- *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: 국번없이 1332(이후 ⑤→①→①)
- ② 화면 상단의 '회사제출서류'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'감사인 선임보고서'를 클릭



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

감사인 선임보고서

1. 회사개황



보고제도 문의

시스템 문의

02, 3145, 7767

02. 3145. 5463

* <u>항목별 작성방법</u>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http://www.fss.or.kr)→업무자료(회계) →외부감사인 선임→외부감사FAQ→최초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강의자료(72번)를 참고

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

 2. 제출할 문서 첨부
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

 2-1 감사인 선임보고 제출 공문
 파일 선택

 2-2 감사계약서 사본
 파일 선택

 2-3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⑦
 파일 선택

 2-4 감사인 교체 사유
 파일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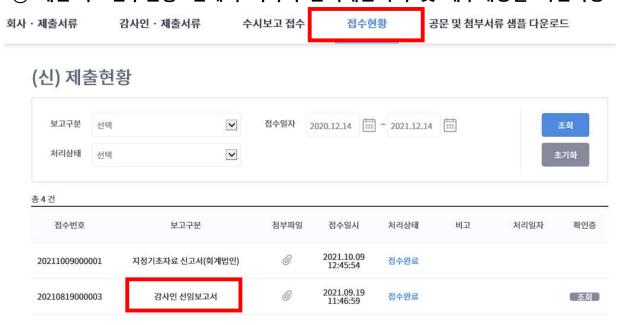
 2-5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
 파일 선택

 2-6 감사위원회 의사록
 파일 선택

 2-7 감사인 선임 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의사록
 파일 선택

* **회사개황에 따라 첨부문서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**지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서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황 정보를 **다시 확인**

⑤ 제출 후 '접수현황'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



⑥ 수정이 필요한 경우 '재제출'을 통해 업로드



- * **재제출 방법** : 접수현황→수정 대상 서류선택→<u>수정(재제출) 클릭</u>→내용 수정 및 문서 첨부하여 접수
 - ※ 처리상태 관계없이 재제출 가능하며, 수정을 반복한 경우 마지막 접수 서류 기준으로 처리